



-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 · 청소년 부모빛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2020. 5.



이영빈 의원

-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설 명 자: 이 영 빈 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달서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상속 포기 신청 등의 법적 절차에 대한 법률지원을 규정하여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을 달서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아동·청소년으로서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인하여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4조에서는 지원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 끝으로, 안 제6조에서는 법률지원 신청 방법 등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2020. 5. 22일부터 2020. 6. 1일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달서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를 상속받아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경우를 방지하여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인 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이영빈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0082030
----------	---------

발의일자: 2020. 5. 22.

발의자: 이영빈, 박종길, 정창근, 윤권근, 박정환,
배지훈

1. 제안이유

- 달서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상속 포기 신청 등의 법적 절차에 대한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나. 지원대상(안 제3조)
- 다. 지원의 범위(안 제4조)
- 라. 지원방법(안 제5조)
- 마. 지원신청(안 제6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비용추계서: 비대상

- 가. 사유: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인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 나. 근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5.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청소년 기본법」 제8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청소년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 양쪽 모두 사망하기 이전에 진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및 자문지원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으로서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제4조(지원의 범위) 지원의 범위는 가정법원의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법률지원으로 한다.

제5조(지원방법 등) ① 지원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 및 자문료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 발굴에 노력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대리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관계 및 대리신청 사유			
법률지원 요청내역				

본인은 부모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을 위해 담당공무원이 재산확인, 주민등록자료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익)

『대구시달서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부모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

※ 제출서류: 1. 신청인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
2. 부모채무 관련 서류 각 1부. 끝.

[별지 제2호서식]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관리대장

연번	신청일		신청인	
지원대상자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신청내역				
지원내역 (요약 또는 관련서류 첨부)				
진행사항 및 결과				
기타사항				

【관 계 법령】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 청소년 기본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